3 -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

※ 경로식당 무료급식,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사업은 지방이양사업('05년~)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되,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·시행

1 목 적

●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(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, 저소득 독거노인)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

2 근거법령

●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3 중점 사업방향

● 경제침체 등에 따라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

4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

가. 경로식당 무료급식

- 급식대상
-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
-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(예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기타 저소득 독거인) 55~59세의 자

● 급식기관

-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 기관으로 지정. 다만,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(읍·면지역은 10인 이상)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

● 급식비용 징수

-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(독거노인 포함)에게는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
- 단,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

나.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● 급식대상

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
-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(예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기타 저소득 독거인) 55~59세의 자
-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● 급식내용

- 노인의 건강·영양상태,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, 국, 밑반찬,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
- 식사 제공 시 이용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 사용
-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(당뇨병, 고혈압)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식생활 지도

● 급식비용 징수

-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(독거노인 포함)에게는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하며,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
- 단,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

3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

5

무료급식사업 운영

가. 지원규모

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급식인원수, 급식횟수, 사업자 재정형편 등 무료급식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소요 예산 지원

☑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

- 급식지원대상자 발굴조사, 급식현장실태 확인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
 -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
 - •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
 - 경로식당,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

나. 급식기관

- (사업주체)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위탁사업자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경로식당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재가노인 복지시설,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

다. 자원봉사자 활용

● 시·군·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기타 부녀회,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위 활용

라. 급식단체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

-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영양측면을 고려한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 지원
-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좋은 식품을 구입
- 식품구입 시 가격, 수량, 신선도,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
-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
-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 지원

- 지자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급식단체·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
- 자치단체 내 위생과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상시 위생관리체계 유지
- 식중독 예방지침 수립
- 상·하반기 정기적인 위생·안전교육 및 실태점검 실시
- 종사자 위생관리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

6 행정사항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무료급식 이용노인을 파악하여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무료급식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
- 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,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식중독 등 급식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 강구
-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,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
-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(독거노인)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 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

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업무 협조

•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(밑반찬 포함)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 (밑반찬) 배달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자체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에 즉시 통보

3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

- 명절 등 연휴기간 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·시행
- 「경로식당·식사배달 노인사업단」 구성 등 노인 일자리사업 적극 활용
 - 노인들이 경로식당의 급식도우미 혹은 식사배달을 수행하는 급식도우미로 활동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·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(老-老 케어) 적극 활용